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요건 확대〉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7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품질경영”이란 기업· <u>공공기관</u>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관리·보증·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기관</u>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u>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u> <u>이하 같다</u>)----- ----- ----- -----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u>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현행	개정안
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1)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을 하게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량 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²⁾를 실시하고 있음.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건수	403	661	635	633	631
적발건수	205	110	195	258*	164*
행정처분	205	110	195	250	156
-인증취소	3	26	7	12	16
-표시정지	24	41	62	62	52
-개선명령	178	43	126	176	88

* 2023년 8건, 2024년 8건은 소송, 재심사 등 진행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의 경우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슈(민원, 언론 등) 발생 시 조사를 실시함.

그런데 현행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KS인증제품·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KS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KS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요건에 “그 밖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4